

BEYUL accounting corporation

# 월간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회계법인 베울의 뉴스레터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회계·세무 분야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당사의 전문가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자료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이 있어 사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베울소식

| BEYUL IFRS 자문 그룹 소개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High-Growth Company in Asia-Pacific)' Top 500,

2년(2023-2024년) 연속 선정

### 회계&세무 뉴스

|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최신예규판례 및 조세뉴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 **BEYUL IFRS 자문그룹 소개**

회계법인 베을의 IFRS 자문그룹은 고객사가 속한 다양한 산업과 사업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감사,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회계자문을 통하여 고객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IFRS 자문, 회계감사**

회계법인 베을의 IFRS 자문그룹은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기타 법률에 따른 법정감사 등 인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 관련 Cross-border 관련 회계/세무 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회계/세무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최근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구축, 자문, 평가대행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통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감사 지원 및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대행**

전문적인 재무제표 작성 대행 업무 및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감사인 대응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장사 / 대형비상장법인 / 상장예정법인 / 중견기업 등에 대한 PA(Private Accountant)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자문**

다양한 산업에 속한 다수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회계 및 세무자문, 플랫폼 기업 특유의 정산과 관련한 자문, 기타 자문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력사항]**

**배종윤** Partner / KICPA / jybae@beyul.co.kr

前 삼일회계법인

現 회계법인 베을 5본부장

---

---

▪ 회계법인 베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High-Growth Company in Asia-Pacific)'  
Top 500, 2년(2023-2024년) 연속 선정



세계 3대 신문사인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서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High-Growth Company in Asia-Pacific) 2024' TOP 500에 회계법인 베울(이하 'BEYUL')이 작년과 더불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는 4월 4일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순위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스타티스타가 협업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기업들과의 직접 소통, 심도 깊은 데이터베이스 리서치 등을 통해 수백만의 아시아 태평양 기업들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수만여 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신청을 하셨고, 그 중 500개의 기업들만이 최종 순위에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024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고성장 기업"중 한 곳으로 BEYUL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선정에서도 국내 기업 외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BEYUL은 아시아 13개국 기업 대상 매출 및 연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 2024' 500개 기업 중 373위, 법률 및 회계서비스부문 전체 3위(국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247위, 법률 및 회계서비스부문 전체 2위(국내 1위))

저희 베울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큰 성장세를 보이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BEYUL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품질과 철저한 결과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회계&세무 뉴스

### ■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I. 지분공시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147) 및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173)

#### II.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착오 등에 의한 반복적 법규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예: 적대적 M&A)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주식, 전환사채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 가. 전환사채(CB) 등 취득

**[위반사례]** 甲은 '23.2.3. 상장사 A사가 발행한 CB(발행주식 등 총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하였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3.6.1.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신규) 사실을 보고하였음

□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 위 사례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일('23.2.3.)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전환권행사일('23.6.1.)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없음

다만,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23.2.3.)과 전환권행사일('23.6.1.)에 각각 신규, 변동(특정증권등 종류 변경)보고 의무 발생

## 나. 특별관계자 추가·제외

\* 특별관계자의 주식 신규 취득, 전량 매도 등

**[위반사례]**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甲(지분율 51%)은 '23.1.10. 쌍방 특별관계자인 乙이 A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하였음에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3.3.28. 본인(甲) 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0.6%+0.9%)하여 보고하였음

□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 甲의 입장에서 乙의 입장에서 상호간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예 : 친족, 공동보유자)

◦ 일방 특별관계자\*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발생

\* 甲의 입장에서 乙이 특별관계에 해당하나, 乙의 입장에서 甲이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 본인-계열회사의 임원)

## 다. 민법상 조합의 개별 조합원 보유 지분

**[위반사례]** 상장사 A의 주주인 甲(3%)과 乙(2%)은 민법상 조합인 X투자조합을 설립하여(甲 60%, 乙 40% 출자) 상장사 A의 주식 10%를 추가 취득하였으나, 甲과 乙은 대량보고시 각각 본인 보유분에 해당하는 9%(3+10\*0.6), 6%(2+10\*0.4)만을 보유지분으로 보고하였음

□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조합원은 상호간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

◦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조합을 통한 지분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각 보고의무자(조합원)가 개별적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더라도 특별관계자(공동보유관계)인 他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 2.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해 회사 발행 증권(주식·전환사채 등)의 소유·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 가. 대량·소유보고의무 동시 발생 여부 확인

**[위반사례]**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인 甲사는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3%)을 장내매도함에 따라 소유 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대량보유(변동)보고만을 이행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미 보고하였음

□ 상장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등 변동시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함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했다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량, 소유 각각 보고 필요

### 나. 보고면제사유 혼동 유의

**[위반사례]** 상장사 A사의 임원인 甲은 주식 병합(2:1)에 따라, 소유한 A사 주식이 3,000주에서 1,500주로 감소하였으나 소유상황(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제 사유 혼동에 유의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 취득, 주식분할·병합, 자본감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및 전환권 행사 등

### 다. 임원 신규 선임시 소유상황 보고

**[위반사례]** 상장사 A사의 주식을 소유(300주, 0.01%)하고 있는 甲은 '23.3.6. A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소유상황(신규)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시, 동 사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황(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 보고하여야 함

◦ 거래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유상황 변동보고와 달리 신규보고는 면제사유가 없음

(출처 : 2024.3.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I. 2024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기본방향>

◆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b>Robust</b> (탄탄한)	감리 절차 명확화, 사전 심의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한 탄탄한 회계감리체계 확립
<b>Vigilant</b> (빈틈없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대 회계리스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심사·감리 실시
<b>Strict</b> (엄정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업계 체질개선 등 엄정한 규율 확립

1.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가. (절차 명확화) 모든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규정·매뉴얼 정비

\*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

◦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

나. (심의기능 강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 운영

\* 조치수준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안건 대상(필요시 산업전문가 포함)

다. (방어권 보장)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방안 마련

◦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 요청할 경우 대면하여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

2.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가. (감시 강화)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 적극 실시

\* 회계부정 제보, 언론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부적정 등

나.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 회사수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

\* ('24년 주제) ①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CB 콜옵션, ③장기공사수익, ④우발부채 공시

다. (시스템·디지털화) 내부 심사·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

\* 심사·감리 대상선정후 조속히 착수, 심사 착수 시 중요 단계별 목표처리기한 설정 등

\*\* 감리자료에 대한 분석·검색 기능 강화, 회사별 회계자료 형식 차이 조정 시스템 개발 등

### 3.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가. (등록요건 감독강화)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

나. (맞춤형 감리) 시장 영향력이 큰 Big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

\* 본 감리前 현장 1주+자료분석 2주(총 3주) 기간을 통해 충실한 감리 준비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주기에서 2년으로 단축

다. (감사역량 제고)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

\* 금감원·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감사지원 TF」 운영('23.11월~)

## II. 심사·감리 실시 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

###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

□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이상), 상장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 ①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전환사채(CB) 콜옵션, ③장기공사수익, ④우발부채 공시('23.6.13. 보도자료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예정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

□ 14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4사, 다군 7사, 라군 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 실시

◦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5사를 추가 선정

◦ 감리대상 선정 회계법인에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 예정

\* 회계법인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3~7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구분*	해당 군별 회계법인 수	'24년 계획	실적			
			'21	'22	'23	계
가군	4	2	2	2	2	6
나군	13	4	4	3	5	12
다군	21	7	5	6	7	18
라군	3	1	2	6	-	8
<b>합계</b>	<b>41</b>	<b>14</b>	<b>13</b>	<b>17</b>	<b>14</b>	<b>44</b>

\* 회계법인 군 분류는 해당 연도 감리대상 선정 시 기준('24년 계획은 '23.8월말 기준)

□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

\* (중점 점검항목)

①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②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③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

④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모니터링 등의 적정성

⑤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3.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4회 공동검사 실시

(출처 : 2024.3.2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개정세법 및 조세뉴스

###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 I.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본문개정1**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세개정1** >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세개정2** >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II.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본문개정1**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

#### III.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 사업자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상세개정1**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IV.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상세개정1**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V.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상세개정1**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 신탁관리업

**V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신설)

가. 개정취지

-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특례 대상 추가

**상세개정1** > ④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Ⅶ.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특례 사유 추가

**상세개정1**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 지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 ② 전력거래 정산비용
- ③ 전력거래 수수료 등

**Ⅷ.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 발급사유 규정 추가

**상세개정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특례 사유 추가

**본문개정1**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X I.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적용요건들 중 일부 내용 완화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 시 정산·납부

**상세개정1**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으로 완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X II.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1 항)

가. 개정취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기준금액 인상

**상세개정1** >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1억 400만원으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X III.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 제105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나. 개정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상세개정1** > (종전) 2025.12.31. → (개정) 2024.12.31.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 신설

**상세개정1** > (적용기한) 2025.1.1. ~ 202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XIV.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에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이자율 상향

**상세개정1** > 연 2.9% → 3.5%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XV.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7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 반려동물 진료비(시행령 제35조 제5호)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추가

- \* 20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료보건 용역(시행령 제35조 제18호, 시행규칙 제24조의2 신설)

「정신건강복지법」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

- \* 「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교육용역(시행령 제36조 제1항)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추가

-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제3항)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 추가

- \* 20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인적용역(시행령 제42조 제1호) 저술·음악·무용·직업운동가 등 면세요건 명확화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6)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아래의 인적용역 추가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7) 과학용 등 수입재화(시행규칙 제40조)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확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 2024.3.22.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전기·수소전기 버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가

\* 20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9) 정부업무 대행단체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2호 신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추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

## XVI. 2023년말까지였던 적용기한 연장 등

- 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공제율 9/109 (그 외 음식점업 8/108)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2)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7)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 제106조의7)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제108조)  
\* 적용기한 2025.12.31.까지 연장
- 10) 영세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대상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 제2항)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연장
- 11)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26조의3 제1항)  
\* 적용기한 폐지
- 12)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적용기한 종료(2023.12.31.까지)

(출처 : 2024.04.09. 국세청 통합자료실)

---



---

## ■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 납세자가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조사관서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달을 1희망에서 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회신(이메일, 팩스 포함)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월의 2개월 후부터 희망조사시기 선택

1) 간편조사 희망 조사시기 안내문 발송 : '24년 7월 18일

2) 선택가능 희망 조사시기 안내 : '24년 9월 ~ '25년 2월

3) 납세자 신청서 회신(예시) : (1희망) '24년 9월, (2희망) '24년 12월, (3희망) '25년 2월

(출처 : 2024.04.09. 국세청 공지사항)



회계법인 베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5 층(삼성동, 이케이타워)

T. 02-569-8994 | E. beyul@beyul.co.kr

[수신거부](#) [Unsubscribe](#)